

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실효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57호(2013.12.26.)로 결정(재정비) 되고 도봉구고시 제2021-112호(2021.6.24.)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62-1 외 7필지 공동개발 지정 변경(경미한 사항)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3조에 따라 실효하고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24일

도 봉 구 청 장

1. 실효고시 개요

- 가. 실효일자 : 2026. 6. 24.(수)
- 나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3조 제 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다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
 - 획지(변경)조서

가구 번호	도면 번호	면적(m ²)	기정			변경		
			획지		비고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	위치	면적(m ²)	
13	3	100.8	창동 662-65	1,026.6	공동개발 지정	창동 662-65	436.8	공동개발 지정
		166.5	창동 662-66			창동 662-66		
		169.5	창동 662-67			창동 662-67		
	4	276.2	창동 662-1			창동 662-1	589.8	공동개발 지정
		111.4	창동 662-3			창동 662-3		
		82.1	창동 662-40			창동 662-40		
		86.1	창동 662-41			창동 662-41		
		34.0	창동 662-42			창동 662-42		

※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

3. 관계도면 : 따로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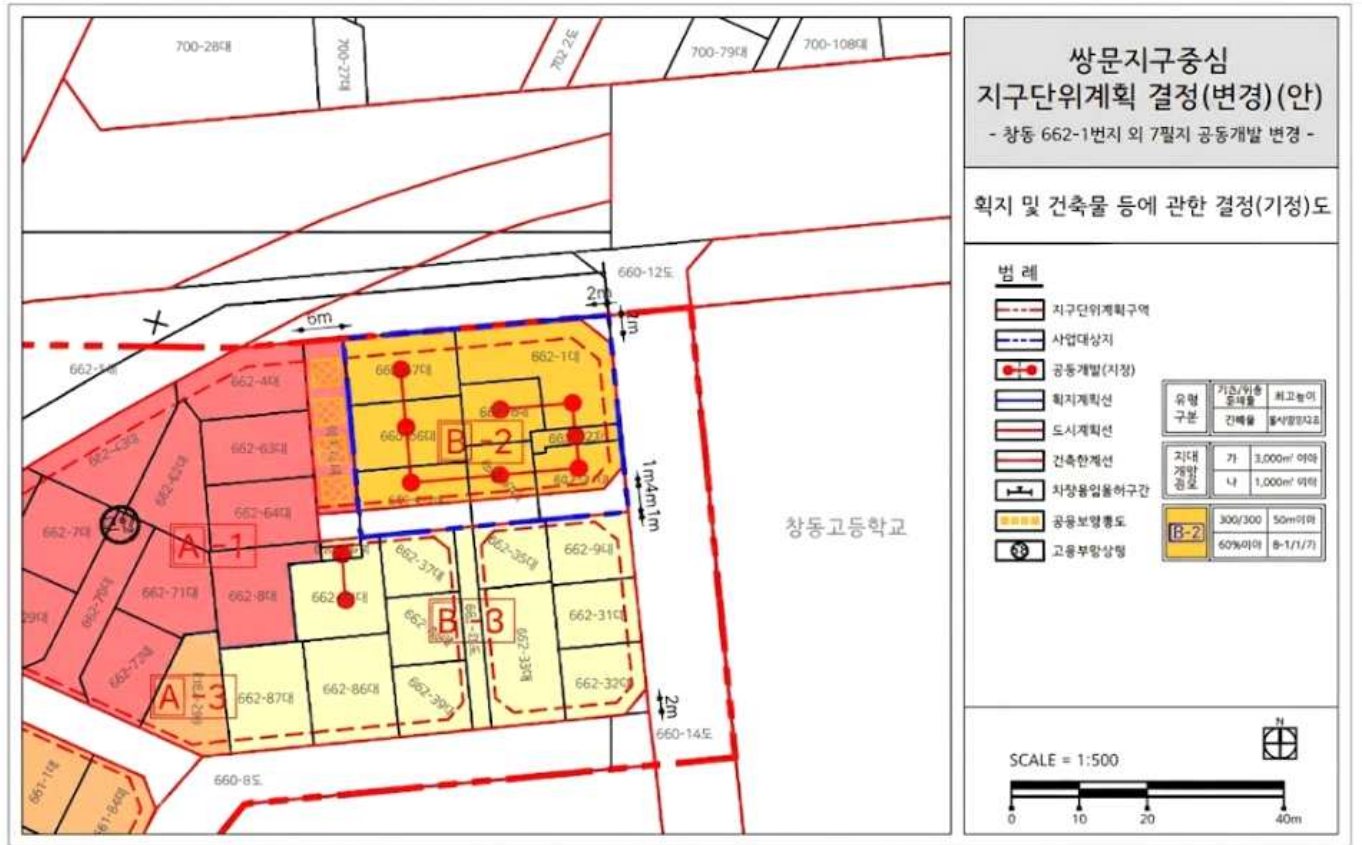
※ 붙임 지형도면(그 외 세부 관계도면 생략)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도봉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091-356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uris.mltm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도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